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3. 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2월 18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2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6. 3.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가. 제안이유

-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 사업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의 건물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의 근거를 두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거주자 및 상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 신설
(제2조제1항 관련 : 안 별표1의2)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범위 축소
 - 공영주차장 → 공영노상주차장(안 제2조의2제1항)
- 전용주차구획의 공유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5항)
- 보조 대상 사업에 대한 추가 신설(안 제25조제3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변경
 - (안 별표1 <비고> 4호, 7호, 16호, 18호, 19호 : 제2조제1항 관련)
-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상 수정(안 별지 제8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지방재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 근거와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를 신설하여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함.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대상을 공영주차장에서 공영노상주차장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함.
 -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1)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함.

1)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비어있는 주차면을 모바일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공유하는 사업

- 보조의 대상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를 추가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면제대상자 및 할인대상자 정비함.
 -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6 호
----------	---------

제출연월일 : 2016.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근거 및 새롭게 시행될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사업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개정에 따라 민간에게 보조금 지급되는 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구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 또한 규제개혁 대상 정비, 개인정보 수집제한, 주차 요금할인 증빙자료 구체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 대상 정비

- 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운행제한장치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상위법 위임 범위에 맞도록 주차장 범위 축소
 - 공영주차장 ▷ 공영노상주차장

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

-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

○ 제25조(보조의 대상)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표 신설

○ [별표1의2] 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규제개혁 대상 정비
- (2) 부패영향평가: 평가실시(의견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실시(의견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12. 3. ~ 2015.12.23. 20일간)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같다”를 “같고,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발견한”을 “발견하였을”로, “주차하는”을 “주차할”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공영주차장”을 “공영노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시 또는 구가”를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3조 중 “거주차”를 “거주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납입한”을 “납입하였을”로 한다.

제4조의2 중 “따라 관리수탁자에 대하여”를 “따른 관리수탁자의”로,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해서는 사항에 대하여”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없도록”을 “없다고”로 한다.

제5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

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른”을 “제8조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6조는 공영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관하여 이를”을 “관하여는 제6조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발행하는”을 “발행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발급한”을 “발급하였을”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하고, “자는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소유자 중”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제26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빈번한”을 “자주”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8호서식의 비용납부 의무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00	20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	10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9,000	8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6,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하며,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경인로·선유로·노들로·도림로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마. 5급지 : (1)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
 간의 급지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
 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사.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 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및 주
 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삭제
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
 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
 를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
 및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
 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8.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

산하지 아니한다.

9.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0. 삭제
11.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2.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구청장은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4.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 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인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
16.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7.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 할 수 있다.
18. 구청장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경우,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지정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9. 삭제
20. 구청장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상품 하역주차 시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1.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지정된 주차면에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2.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

[별표 1의2]

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1구획당/1월)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정기권	거주자	40,000	30,000	20,000
	상근자	40,000	30,000	20,000
시간주차		- 1시간당 1,200원		
기타		- 별표 1에 따른 할인을 적용 (단, 공유주차 요금은 할인을 적용 제외)		

부가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 10. (생략)

③ (생략)

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

-----.

1. -----

----- 발견하였을 -----

----- 주차할 -----

-----.

2.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
----- 공영노상주차장 -----

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2. (생략)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생략)

3. 거주차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드는 -----
-----.

1. 2. (현행과 같음)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1.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

2. (현행과 같음)

3. 거주자 -----

② -----
----- 납입하였을 -----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한다.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용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과 운용에 대해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

-----.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 다른 관리수탁자의 -----
----- 연 1회 -----
-----.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관련되는 -----
----- 대해서는 -----

-----.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

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정하는 경우

2. (생략)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신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1. -----

----- 없다고 -----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

----- 제8조의 -----
----- 따른다.

② -----

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주의사항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제6조는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

②, ③ (생략)

제23조(융자의 방법) ① (생략)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략)

제25조(보조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

1. ~ 4. (현행과 같음)

5. ---- 밖의 -----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 ----- 관하여는 제6조를 ----.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융자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한 사항은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보조의 대상) -----

주차장 특별회계(「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소유자 중 다음과 같다.

1. 2. (생략)

<신설>

제26조(보조의 방법) ① (생략)

②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의2(공사비의 반환)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자는 -----.

1. 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제26조(보조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른다.

제26조의2(공사비의 반환) ① -----

- 밖에 -----

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00	20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	10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9,000	8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6,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하며,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00	20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	10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9,000	8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6,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하며,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 3. (생략)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 6. (생략)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 15. (생략)
16. 다동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7. (생략)
18. 구청장은 구청 민원업무 방문차량의 경우 당산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9.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방문차량의 경우 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0. ~ 22. (생략)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및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 6. (현행과 같음)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 15. (현행과 같음)
16.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동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7. (현행과 같음)
18. 구청장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경우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지정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9. 삭제
20. ~ 22. (현행과 같음)

